

#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 내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의 채용절차, 심사방법, 임용계약, 재임용 기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구분)

- ①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3조(강사채용계획)** 교무처장은 학기단위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별 채용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여 강사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확정한다.

**제4조(채용공고)** 교무처장은 강사를 공개경쟁으로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마감일 7일 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과목 및 주당강의간, 자격기준, 심사기준, 유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발췌하여 학교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 제5조(채용대상자 우대 등)

- ① 채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정자격을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② 본교 겸임 또는 초빙교원 등이 강사 채용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직원을 제출한 후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공개채용

### 제6조(서류접수)

- ① 강사공개채용은 지원서 및 관련서류 등을 서류로 제출 받는다.
- ② 지원 등록내용 또는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심사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심사
2. 전공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등에 대한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 내용 및 교육자적 자질·열정, 인성, 가치관 등에 대한 면접심사

### 제8조(심사절차)

- ①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8조의 심사항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 ② 각 단계별 심사항목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심사위원회에서는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초·전공심사에서 3배수 내외로 선발한 후 이들만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면접대상자 인원선정은 각 학과의 형편에 맞게 진행한다.
-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초심사를 A, B, C, D, E로 평가한 후 B이상인 과반수 이상이면 적합(P), 과반수 미만이면 부적합(F)로 평가한다.
-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100점 만점으로 “우수”는 평가기준점수의 80점 이상을 부여하고, “보통”은 80점 내지 60점을 부여하며, “미약”은 60점 내지 40점을 부여한 후 산술 평균으로 한다.
- ⑥ 심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하거나, 전공심사를 생략하고 면접 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⑦ 심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심사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최대 3인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되, 그 인원수는 각 학과의 형편에 맞게 하도록 하고 책임자가 없는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장 및 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⑨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강사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3장 특별채용

#### 제10조(특별채용심사위원회 구성)

- ① 학과장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이하 본 조 및 제11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강사채용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1조(특별채용 절차)** 강사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심사위원회는 특별채용을 위한 국내·외 전공 인력풀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원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 및 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장 임용절차

**제12조(임용예정자 통보)** 임용예정자 통보는 합격통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E-메일 또는 문자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임용서류제출)**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임용예정 통보를 받은 자는 인적사항과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력조회 등)**

- ① 교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용예정자의 학력 및 경력을 조회 또는 확인한다.
- ② 외국인 강사채용예정자는 제1항의 증빙서류인증을 위해 출신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증명서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발급기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교무처장은 채용예정자의 신원 조회 또는 범죄경력을 확인한다. 다만, 외국인 강사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외국정부가 자국민에게 취업 등 해외사용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한다.

**제15조(계약세부사항)**

- ①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한다.
  - 1. 근무시간 :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임용기간
  - 2. 임금 : 임용규정에 따라 책정하여 지급하되 방학기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함 .  
다만,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로 지급함.
  - 3. 면직사유 :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나 학과에서 정하는 면직사유
  - 4. 재임용 요건 및 절차 :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정한 요건 및 학과에서 정하는 재임용 조건
  -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
    - 가. 강의시간 : 학기별 주당 6시간 이내(특별한 사유로 총장이 허락할 경우 최대 9시간).  
다만, 계절학기 담당과 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함.
    - 나. 복무 등 근무조건 :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나 학과에서 정하는 근무조건
- ②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의 동의를 얻은 후 체결한 계약조건의 변경을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과장은 제1항 제3호, 제4호 및 5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제16조(임용)**

- ①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채용예정자의 계약사항 등을 정하며, 총장은 서면계약한 후 임용한다.

**제17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강사의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인정 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별첨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재임용 신청 및 기준 등)**

- ①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강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첨2>에 따라 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 ② 학과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전임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심사위원회에서 <별첨2>에 따라 심의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기타

### 제19조(강의 제한 등)

- ① 강사가 담당 교과목에서 70점 미만의 강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1년간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다.
- ②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일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공개채용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

심사구분	심사항목	평점 만점	심사방법
기초심사	가.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P/F	① 기초 및 전공심사를 바탕으로 3배수 내외로 선정한 후 면접 심사를 할 수 있음  ②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 합 또는 생략하여 진행 할 수 있음  ③위원별로 이견이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전공심사	가.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및 잠재적 역량 등 나.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등	100	
면접심사	가. 전공심사 결과 나. 교육자적 자질·열정,인성, 가치관 등	100	

※ 기초심사는 위원별로 “우수” : A, B, “보통” “ C, D, ”미흡“ : E로 평가. B 이상이 과반수이상 이면 P, 과반수 미만이면 F로 평정. B이상 평가자가 과반수이상이면 P, 과반수 미만이면 F로 평가.

다만,P(Pass)인 자에 한하여 전공 및 면접심사 가능

※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는 심사위원별로 “우수”는 평가기준점수의 80점 이상을 부여할 수 있고, “보통”은 80점~60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미약”은 60점~40점으로 부여할 수 있음.

※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 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체크.

※ 면접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3인 이내로 추천하되 학과 상황에 맞게 조정함.

**<붙임> 신규채용 심사표**

<별표1-붙임> 신규채용 심사표

## 강사 신규채용 심사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기초심사>

심사내용	심사결과					평가결과 (P/F)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가 일치하는가?						

※ 위원별로 “우수” : A, B, “보통” : C, D, “미흡” : E로 평가. B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면 P, 과반수 미만이면 F

<전공심사> 면접심사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 (    ) ※해당되는 경우에만 “√”함.

심사내용	심사결과					평가결과 (100~40)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지원자의 전공 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등은 우수한가?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등은 우수한가?						

※ “우수” : 80점 이상, “보통” : 80점~60점, “미흡” : 60점~40점, 평결과는 산술평균임

<면접심사>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 실시 (    ) ※해당되는 경우에만 “√”함.

심사내용	심사결과					평가결과 (100~40)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교육 실적·우수성, 잠재적 역량 등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은 우수한가?						
-본교 정체성에 부합되는 가치관 등						

※ “우수” : 80점 이상, “보통” : 80점~60점, “미흡” : 60점~40점, 평결과는 산술평균임

심사 결과	추천여부( O, X ), 추천순위 (    )
-------	---------------------------

본 대학 강사의 채용을 위하여 채용후보자의 실적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이 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 . .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강사 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_\_\_\_\_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첨1>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환산을 적용 인정 기준(내규 제17조관련)

제1조(목적)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함)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함)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별첨 2> 강사 책임용·면직 인사지침(내규 제18조 관련)



## 제1절 강사 재임용 기준

강사의 재임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재임용 요건

강사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표1>의 '평가항목'에서 평점 70점 이상 취득

#### <표 1>평가항목별 재임용요건

심사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평점기준
공통 평가항목 (100점)	1) 강의계획	-강의계획서를 기한 내에 입력하였는가? -수업목표 및 강의계획은 적절한가?	20점
	2) 강의내용	-담당교과목을 배정된 시간표에 따라 수행하였는가? : 미준수 시 1시간당 3점 감점 -담당교과목을 휴강한 경우 보강을 하였는가? : 미보강 시 1건당 10점 감점 -학생역량을 높이는데 적합한 강의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10점)	30점
	3) 평가 및 개선	-학칙에 의한 성적평가가 이루어 졌는가?(10점)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는 적정수준 이상인가? 평균점수 95~100 30점,90~94 25점,85~89 20점, 80~84 15점,75~79 10점,70~74 5점,69점이하 0점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1) 개선 노력이 매우 많음 : 10점 2) 개선 노력을 적절하게 함 : 5점 3) 개선 노력이 없음 : 가점 없음	50점
학과 평가항목	학과 요건	- 소속 학과 또는 학교발전을 위한 기여도가 있는가?	10점 가점

### (2) 재임용 요건의 적용

- ① 강사가 휴직, 정직 등의 사유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② 재임용 실적은 임용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실적으로 하되, 특별히 계약으로 정한 경우 임용 전 실적도 포함 할 수 있다.

## 제2절 재임용 절차

강사의 재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사전통지

학과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붙임1>재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임용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 또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한다.

### (2) 재임용 심사 신청

- ① 재임용 신청을 통지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붙임1>재임용 신청서'를 학과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강사는 본인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의 특이사항, 교육방향, 열정, 앞으로의 계획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강사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재임용 심사

- ① 학과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재임용 요건 충족 여부, 학과장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정한 재임용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 ② 학과 재임용심사위원회는 해당 강사가 이 지침에서 정한 재임용요건이나 학과장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계약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통보한다.
- ③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는 10일 이내에 학과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과장은 강사가 재임용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재임용심사위원회는 다시 열어 재심의 하여야 한다.
- ⑤ 학과장은 재임용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⑥ 학과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강사가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3>재임용거부사유서'에 그 사유를 기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재임용 여부 결정 및 통보

- ①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거부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 ③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 ④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았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강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면직된다.

### (5) 계약 체결

- ① 재임용대상자에 대하여는 규정에서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 ② 학과장은 필요한 경우 강사의 계약사항에 다음 각 호의 계약사항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학과의 특성에 따른 복무 등 근무조건
  2. 학과의 특성,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면직사유
  3. 학과에서 추가로 정하는 책임용 요건
  4. 그 밖에 학과장이 필요하여 계약에 포함코자 하는 사항
- ③ 학과장은 강사계약서 제2항의 계약사항 추가를 요구할 경우 해당 강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절 강사의 면직 사유 및 절차

강사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하는 면직의 사유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면직의 사유

강사의 면직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② 학교규정으로 정한 면직사유

1. 교육과정 개편
  - 해당 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
  -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때
  - 해당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 담당하는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의 폐지
  -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입교원을 채용한 E0
  -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4. 본 교단이 인정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활동하게 될 때

#### (2) 면직의 절차

학과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 대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여 책임용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나 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경우 P, 그렇지 않는 경우 F로 평가

#### <붙임1> 책임용 신청서





## 강사 재임용 거부 사유서

소속	성명	생년월일

### <재임용 거부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재임용심의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해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합니다.

20 . . . . .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강사 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_\_\_\_\_ (서명)

교원인사위원장 귀하